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90호 2022. 12. 14.(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36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2-137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거창군 고시 제2022-138호	도로명 부여 고시	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681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7
거창군 공고 제2022-1682호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9
거창군 공고 제2022-1700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재열람 공고	11
거창군 공고 제2022-1701호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3
거창군 공고 제2022-1703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거창군청 증축)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7
거창군 공고 제2022-1705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거창군 공고 제2022-1706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거창군 공고 제2022-1707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36
거창군 공고 제2022-1715호	2022년도 제2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39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2. 12. 14.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2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웅양면	변경 전	웅양로	웅양면 신촌리 164-2 (웅양로 2255)	-	도면참조	없음	없음	종속구간 연장	직권
		변경 후	웅양로	웅양면 신촌리 164-2 (웅양로 2255-1)	웅양면 신촌리 1688 (웅양로 2255-58)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1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218-72 등 4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61-1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 등의 설정·부여 절차)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도로명 부여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2. 12. 14.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1건(거열산성로) / [붙임] 참조
4. 도로명 부여 절차

도로명 부여 신청·직권	신청 받은 날부터	주민의견 수렴공고	의견제출 기간 지난 날부터	주소정보 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고시
	⇨		⇨		⇨	⇨
	10일 이내	14일 이상	30일 이내	심의·의결	10일 이내	공고
						예비도로명 외 결정

5. 참고사항

- 도로명의 부여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4일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부여 조서

행정구역	도로위계	도로명	도로길이	도로폭	도로구간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기초번호)	끝지점(기초번호)		
거창읍	로	거열산성로	1,720m	20m	거창읍 상림리 910 (거열산성로 1)	거창읍 가지리 457-2 (거열산성로 186)	거열산성(문화재) 명칭을 반영한 도로	직권

주소정보기본도



항공사진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14.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248-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증설사업
3. 사업시행 개요

종류	위 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비고
		결정 면적	금회 시행면적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248-3번지 일원	2,448.0	1,475.0	거고 제2019-68호 (2019.6.26.)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05.31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6.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 8.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거창읍 가지리	산248-3	임	1,475	1,475		거창군				
합 계				1,475	1,475						

●거창군 공고 제2022-1682호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거창군 관내 사거리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AI 영상감지)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07일

거창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위험 감소
- 사업명 : 스카이스티 등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공사
- 설치규모 : AI 영상 감지시스템 구축 1개소(7대)
- 설치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60-4번지 일원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년 12월 07일 ~ 2022년 12월 27일(21일간)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beom0509@korea.kr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업명	스카이시티 등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공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60-4번지 일원)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거창읍 김천리 260-4번지 일원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재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2. 12. 14.

거 창 군 수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
주거지역	소 계	4,873,879	-	4,873,879	0.6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1,743	-	3,121,743	0.4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57	-	196,057	0.02	-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
상업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지역	소 계	1,271,445	-	1,271,445	0.16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1,243,003	-	1,243,003	0.15	-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
녹지지역	소 계	25,413,400	-	25,413,400	3.16	-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
	생산녹지지역	7,711,971	-	7,711,971	0.96	-
	자연녹지지역	16,046,669	-	16,046,669	1.99	-
관리지역	소 계	262,139,621	-	262,139,621	32.60	-
	보전관리지역	171,787,047	감) 57,460	171,729,587	21.36	-
	생산관리지역	8,261,516	-	8,261,516	1.03	-
	계획관리지역	82,091,058	증) 57,460	82,148,518	10.21	-
농림지역		469,394,502	-	469,394,502	58.37	-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06	-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보전관리	계획관리	57,46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창포원 및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제2스포츠 타운	체육시설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	증) 56,820	56,820		

나.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지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제2스포츠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신설 - 면적 : 56,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창포원 및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체육시설 집중화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6.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를 위한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2-1701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 직권 용도폐지 검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항 같은법 시행령 32조의3에 의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주민 등은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4 일

거창군수

1. 용도폐지 검토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폐지 신청면적	비고
거창읍 대평리 1342-10	답	135㎡	135㎡	위치도 등 붙임 참고
거창읍 대평리 1335-8	답	206㎡	206㎡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022. 12. 14. ~ 2022. 12. 28.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12. 14. ~ 2022. 12. 28.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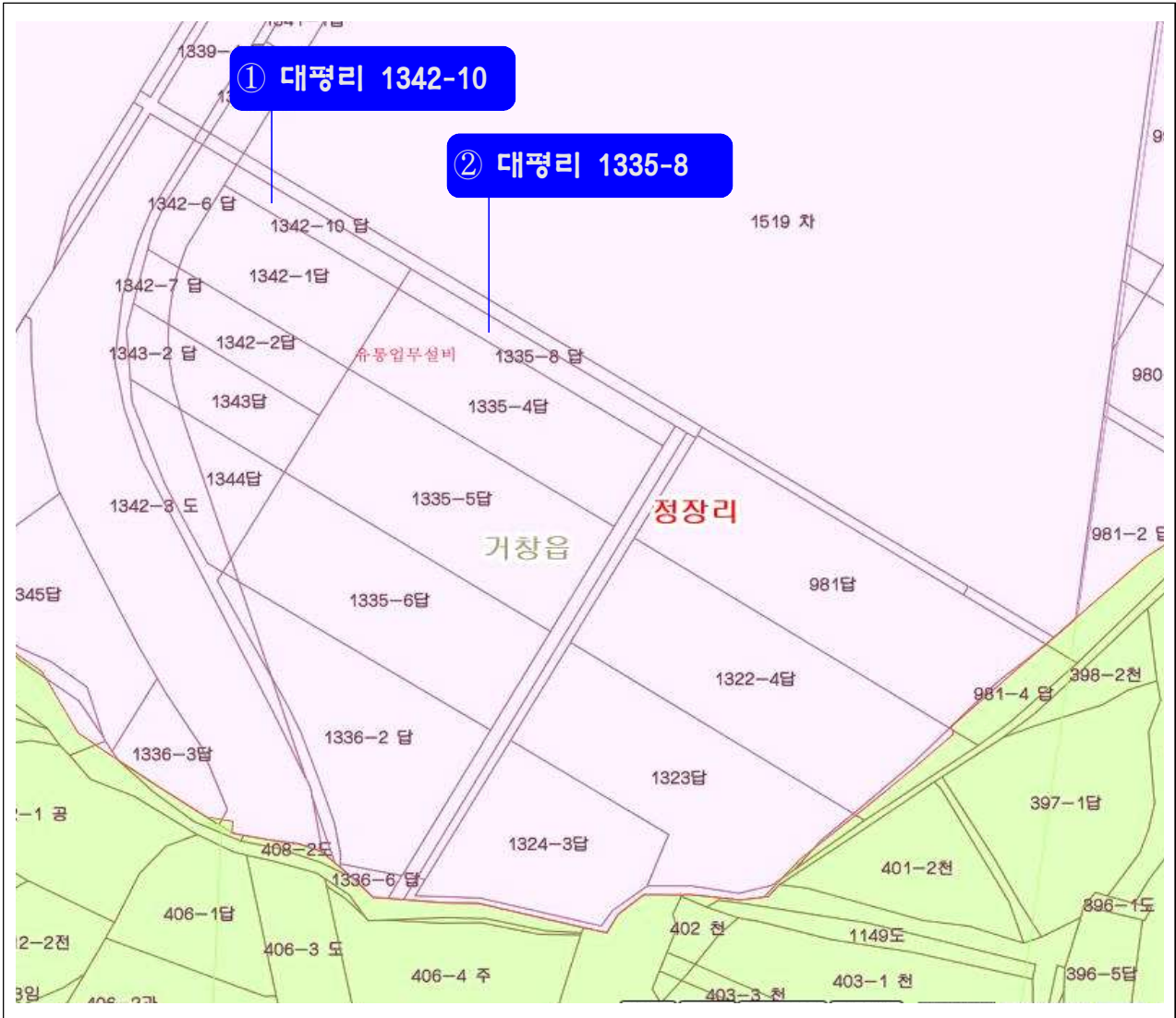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2 지적현황 및 용도폐지 대상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상 면적	용도폐지 신청면적	비고
계(2필지)				2필지	341㎡	
1	거창읍 대평리	1342-10	답	135㎡	135㎡	
2	〃	1335-8	답	206㎡	206㎡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거창군청 증축)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6-126(2016.12.15.)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거창군청)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14.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명 칭 : 거창군청 증축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가. 부지면적 : 9,407m²

나. 사업개요

종 류	위 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공청사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9,352	9,407	557.08	1,738.17	거창군 제2016-126호 (2016.12.15.)	

다. 세부내용

동별	층별	용도 구조	기정 연면적	증축 연면적 (변경)	소계	비고
주1	지하1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525.02		1,525.02	
	지상1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473.82		1,473.82	
	지상2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360.07		1,360.07	
	지상3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461.73		1,461.73	
	지상4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157.38		1,157.38	
	지상5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669.60		669.60	
	지상5층	공공업무시설 경량철골구조	82.40		82.40	
	소 계		7,730.02		7,730.02	
주2	지상1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51.48	51.48	별동증축
	지상2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521.67	521.67	별동증축
	지상3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417.59	417.59	별동증축
	지상4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362.13	362.13	별동증축
	지상5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385.30	385.30	별동증축
	소 계			1,738.17	1,738.17	
부1	지상1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36.80		136.80	
	지상2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36.80		136.80	
	지상3층	공공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36.80		136.80	
	소 계		410.40		410.40	
부2	지상1층	공공업무시설 경량철골구조	9.90		9.90	
부3	지상1층	공공업무시설 경량철골구조	5.28		5.28	
합 계			8,155.60		9,893.77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1. 30.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0-3	대	3,159	3,159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2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대	6,248	6,248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사무 조정
에 따른 변경 사항 및 부서별 폐지·변경된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른 국, 담당관 신설·폐지 및 과(課) 명칭 변경
-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 전략담당관, ~~파라전략과~~,
경제기업과, 건설교통과
 - 나. 3국체제 개편에 따른 책임국장제도 정착, 국장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한 국장 전결권 확대
 - 다. 신규·폐지·이관 사무 등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1국(局) 및 1담당관의 신설과 그에 따른 직급 신설(안 제3조)
 - 1) 안전건설국 : 서기관·기술서기관
 - 2) 전략담당관 :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 나.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직급 조정(안 제3조)
 - 1) 행정복지국 → 행정국

2) 경제산업국 → 경제복지국

가) 현행: 서기관 · 기술서기관

나) 조정: 서기관

3) 경제교통과 → 경제기업과

4) 환경과

가) 현행: 행정 · 공업 · 환경사무관

나) 조정: 행정 · 농업 · 환경 · 시설사무관

5) 건설과 → 건설교통과

다. 읍면장 직급 조정(안 별표 1)

1) 거창읍장

가) 현행: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나) 조정: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2) 위천면장

가) 현행: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나) 조정: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라. 본청 담당관 · 과, 직속기관의 분장사무 변경(안 별표 2)

마.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일반직 4급: 증1명

가) 본청(증1명): 서기관

2) 일반직 4~5급: 감1명

나) 읍(감1명):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일반직 5급: 증1명

가) 본청(증1명): 행정 · 농업 · 환경 · 시설1

나) 본청(감1명): 행정 · 공업 · 환경1

다) 의회(감2명): 행정2

라) 의회(증2명): 행정 · 시설2

마) 읍(증1명):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 농업1

바) 면(증1명): 행정 · 시설 · 농업1

사) 면(감1명):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 농업1

4) 일반직6급: 증1명

가) 본청(증8명): 행정1, 시설1, 행정 · 사회복지1, 행정 · 시설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1, 행정 · 농업2,
행정 · 공업1

나) 본청(감8명): 세무1,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 농업1, 사회복지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1, 행정 · 농업 · 녹지 · 시설1,
전산 · 정보통신1, 행정 · 농업 · 시설2, 사무운영 ·
기계운영 · 운전 · 위생1

다) 농업기술센터(증1명): 행정 · 농업1

라) 읍(증1명): 행정1

마) 읍(감1명): 사무운영 · 토목운영 · 위생 · 방호1

5) 일반직7급: 증1명

가) 본청(증7명): 행정2, 시설1, 행정 · 공업1, 행정 · 농업1, 행정 ·
간호1, 행정 · 농업 · 시설1,

나) 본청(감4명): 행정 · 사회복지2, 농업 · 녹지1, 행정 · 공업 · 농업1

다) 농업기술센터(증1명): 행정 · 농업1

라) 농업기술센터(감1명): 행정 · 시설1

마) 보건소(감1명): 행정 · 보건1

바) 면(감1): 농업 · 녹지1

6) 일반직8급: 감3명

가) 본청(증5명): 행정3, 행정 · 사회복지1, 행정 · 농업 · 녹지1

나) 본청(감7명): 세무1, 행정 · 세무1, 행정 · 시설1, 농업 · 녹지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1, 행정 · 공업 · 환경1, 행정 ·
보건 · 간호1

- 다) 읍(감1명): 위생·방호1
- 라) 면(증1명): 행정·세무1
- 마) 면(감1명): 행정·사회복지1

7) 일반직9급

- 가) 본청(증4명): 행정3, 시설1
- 나) 본청(감4명): 행정·공업·환경1, 운전1, 위생1, 방호1
- 다) 사업소(증1명): 행정·시설1
- 라) 사업소(감1명): 토목운영1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인구교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3.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④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2.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4. 행복나눔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⑤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2.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3.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
5.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3. 인구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인구교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4. 민원소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6.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8. 행복나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③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1.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4. 행복나눔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호신설2021.4.28.)	⑤ 안전건설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

현 행	개 정 안
<p>3. <u>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u></p> <p>4. <u>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u></p> <p>5. <u>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6. <u>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u>무관</u></p> <p>2. <u>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u></p> <p>3. <u>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u></p> <p>4. <u>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u></p> <p>5. <u>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u></p>

[별표 1]

읍장·면장 직급(제6조 관련)

직 위	직 급
거창읍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u>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u>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주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응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

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

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8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7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7명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2-170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주민 등은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4일

거창군수

1. 검토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신청면적	비고
위천면 모동리 1175-14	구	2,928㎡	261㎡	위치도 등 붙임 참고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022. 12. 14. ~ 2022. 12. 28.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2. 12. 14. ~ 2022. 12. 28.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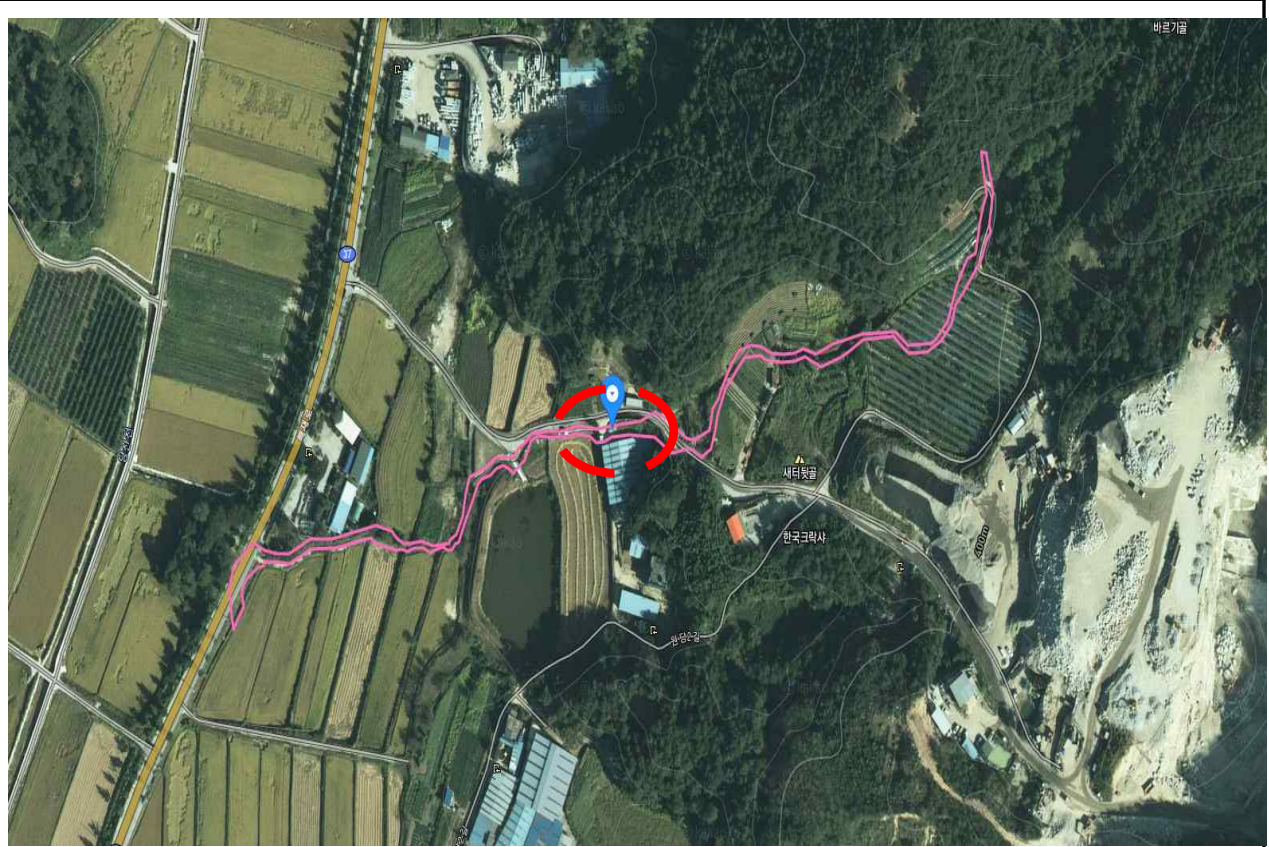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2년도 제2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2년도 제2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고
기획예산담당관	홍보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전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2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과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일반임기제 : 만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 만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홍보 (행정6급)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 (경력)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공기관 및 병원, 노인시설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근무 부서	임용예정 분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기획예산 담당관	홍보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 기획방송 프로그램,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 뉴스 보도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 SNS 미디어 홍보, 영상 기자단 운영 ○ 군정 광고안 디자인, 홍보동영상 제작
보건소	간호사	마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 치매환자 선별 및 진단 검사 수행 ○ 감별검사 협약병원 의뢰 ○ 치매예방 관리 사업 ○ 상담등록관리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구 분	인 원	분 야	직 급	임용기 간	근무시간	비 고
일 반 임기제	1명	홍보	행정6급 (일반임기제)	2년	주당 40시간	
시간 선택제 임기제	2명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년	주당 35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보수 수준

- 일반임기제 공무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하되 경력 등을 감안하여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급(상당)	77,932	51,928

-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위 : 천원)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1,526	

※ 보수월액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2. 12. 26. ~ 12. 28.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22.12.29.(목)	2023.1.6.(금) 거창군청	2023.1.9.(월)

⇒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6)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
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제출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6급 7,000원 / ▶ 마급 5,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필요시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전형결과 적임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2년 제2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 명
임용 부서		(담당자 기재)		
분야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 [서식1]	
2	이력서 ▷ [서식2]	
3	자기소개서 ▷ [서식3]	
4	직무수행계획서 ▷ [서식4]	
5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7	자격검증 동의서 ▷ [서식5]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서식6]	
9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서식1]

응시원서

본인은 2022년도 제2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거창군 수입증지 날인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2년도 제2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인)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시간선택제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6급 : 7천원 / 마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는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제 응시자 책임입니다.

[서식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기재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2. . . 작성자 : (인)					

[서식4]

직무수행계획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2. . . 작성자 : (인)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